

등록번호	항공기술과-2976
등록일자	2017. 10. 27.
결재일자	2017. 10. 27.
공개구분	비공개(6)

주무관	항공사무관	과장	항공안전정책관
김은혜	이석진	오성운	전결 2017. 10. 27. 황성연
협조자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 보고

주요 검토사항	
정 책 중 요 도	보통
민 원·갈 등 가 능 성	낮음
기 관 간 이 견 가 능 성	낮음
홍 보 대 책 필 요 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낮음
서 민 생 활 관 련 성	낮음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 확인을 위한 세부 항목을 구체화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설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

항공안전정책관
항 공 기 술 과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 보고

□ 추진배경

- 경량항공기 제작 후 제작자 능력 확인에 대한 검증 기준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가 미흡
 - 품질관리, 부품·조립품·항공기 수락시험, 지속감항 절차 등을 검증받아야 하나, 세부 검사내용이 없음

□ 주요 개정내용

- (검증항목)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검증 확인항목을 미국 ASTM 기준과 비교하여 세부항목* 등을 구체화하고 제작자 검증방법 마련
 - 품질관리규정, 인력현황, 제작방법·테스트 결과 보고서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등 제작사가 제작생산·감항성 유지방법을 위한 기준 추가

- (공인기관) 우리부 소관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공인기관이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인증의 주체를 국토부 전문검사기관**으로 변경 하고

* 현재 한국산업기술원·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지정되어있으나, 두 기관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수행 할 능력, 인력등 어려움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

** 항공안전기술원 : 항공 검사업무 목적으로 전문검사기관 지정('15.4.15)

- (기타) 안전성인증업무의 기관 이관사항*, 안전성인증 제출서류추가 (보험가입증명서), 용어를 민원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쉽게 표현**등

*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업무 이관(11.4)

** 사양서 → 성능을 표시한 설명서

□ 향후 추진일정

- 사전규제심사심의 요청(10.27) · 행정예고 알림(11월초), 고시(11월말)

붙임.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부